심사결과 요약서

공 사 명 : 석관동 꿈나무 돌봄센터 보수 공사

(단위 : 원)

		구 분	요청내용	심사내용	증 감	비고
	재	직접재료비	8,994,379	8,994,379	0	
	료	간접재료비	0	0	0	
		작업부산물	0	0	0	
	비	소 계	8,994,379	8,994,379	0	
순	노	직접노무비	6,325,325	5,791,225	-534,100	
	무	간접노무비	607,231	555,957	-51,274	
	비	소 계	6,932,556	6,347,182	-585,374	
l ,		운 반 비	0	0	0	
공	제	기계경비	250,000	250,000	0	
		산재보험료	263,437	241,192	-22,245	
사		고용보험료	60,313	55,220	-5,093	
		건강보험료	0	0	0	
اما		연금보험료	0	0	0	
원	l	노인장기요양보험료	0	0	0	
	경	퇴직공제부금비	0	0	0	
가		산업안전보건관리비	0	0	0	
	비	기타경비	812,273	782,419	-29,854	
	-	환경보전비	46,709	45,106	-1,603	
		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	0	0	0	
		선물이도급대금 시급보증시	U	U	0	
		소 계	1,432,732	1,373,937	-58,795	
계			17,359,667	16,715,498	-644,169	
		일반관리비	1,041,580	1,002,929	-38,651	
		이 윤	1,184,328	1,048,967	-135,361	
		폐기물처리비	414,425	414,425	0	
					0	
		[공 급 가 액]	20,000,000	19,181,819	-818,181	
부가가치세			2,000,000	1,918,181	-81,819	
		[도 급 액]	22,000,000	21,100,000	-900,000	
					-0	
					-0	
		[배사동총]	22,000,000	21,100,000	-900,000	

[※]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기타경비 항목 : 수도광열비, 복리후생비,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, 여비·교통통신비, 세금과공과, 도서인쇄비

주요심사내용

■ 공 사 명 : 석관동 꿈나무 돌봄센터 보수공사

□ 사업개요

위 치	성북구 석관동 190-10
공사개요	지상1층 70.54㎡ 내부보수공사
공사기간	2015.8 ~ 2015.9

□ 심사평가 결과

(단 위 : 원)

설계금액	심사금액	증감액	증 감율(%)
22,000,000	21,100,000	-900,000	-4.09

□ 주요 심사내용

구 분	심 사 요 청	심 사 결 과	검토의견	
	O41호표, 0.5B 양면치장쌓기	O41호표, 0.5B 양면치장쌓기		
	-보통인부:1.3인	-보통인부:1.01인	표준품셈 건축8-1-3 치장쌓기 적용	
	- 줄눈공 :0.45인	-줄눈공 :1.42인		
	O44호표, 0.5B 시멘트벽돌쌓기	O44호표, 0.5B 시멘트벽돌쌓기		
	-조적공:1.8인	-조적공:1.6인	표준품셈 건축8-1-2 벽돌쌓기 적용	
	-보통인부:1.0인	-보통인부:0.56인		
	o114호표, 반자지바름	o114호표, 반자지바름		
일위대가	-도배공:0.026인	-도배공:0.024인	표준품셈 건축 18-2-3 도배 준용	
	-보 통 인부:0.026인	-보 통 인부:0.006인		
	o115호표, 벽지바름	o115호표, 벽지바름		
	-도배공:0.026인	-도배공:0.024인	표준품셈 건축 18-2-3 도배 준용	
	-보통인부:0.026인	-보통인부:0.006인		
	o 155호표, 목재문 철거	O155호표, 목재문 철거	5-1-7-1-7-10 O.7 A.7-1	
	-일반기계운전사	-보통인부	참조값 적용 오기 수정 	

□ 기타사항

- ㅇ 주민참여 감독관 등 청렴계약 옴브즈만 시행 철저 (감사담당관-3566)
 - 3천만원 이상 모든 공사과정에 「주민참여감독관」의무 지정 및 참여
- ㅇ 준공 시 물량 검토 및 정산 철저
- o 연간단가 계약공사는 작업지시에 따라 계약금액이 확정되므로 작업지시를 가능한 1회당 4천만원 이하로 작업지시 및 정산 조치

(단, 1건당 4천만원 이상으로 작업지시가 불가피한 공사는 예외로 하되 설계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)

- ※ 2013년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 순회점검 지적사항(환수)이므로 정산 철저
- ㅇ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개선사항 이행 철저
- 1. 주계약자 공동도급제
 - 적용대상 : 추정가격 2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으로 종합+전문업체로 구성되는 공사
 - 시행방법 : 종합 +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
- 2. 하도급표준계약서사용
 - 적용대상 :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공사 전부
 - 시행방법 : 하도급 계약시「하도급 표준계약서」사용 추진
- 3. 하도급직불제
 - 적용대상 :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공사 전부
 - 시행방법 : 종합, 전문건설업체가 직불을 합의한 경우 발주자 직접지급
- 4. 하도급대금 지급예고 알림판 설치 및 SMS문자 전송
- 5.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철저
- 6. 도급자 및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부조리 근절 공한문 발송
- o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 시행 철저(http://cws.kiscon.net/main.aspx)
- o 통합공사관리시스템 입력 철저(http://pmis.eseoul.go.kr/Main/Welcome.action?cmd=normal)
- ㅇ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행

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63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대상 공사는 <u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331호 【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</u>】을 적용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을 계상하여 발주하시기 바랍니다.